SHIN&KIM
법무법인(유) 세종

불용 처리된 회사 비품을 무단으로 판매하고 사무실 부속물을 철거하여 가져간 직원에 대한 징계해직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전주지방법원 2026. 10. 28. 선고 2026가합1063 판결)

1. 사안 및 쟁점

원고가 근무하던 피고의 지사는 2025. 5.경 사무소 이전을 앞두고 있었으며, 고정자산 관리담당자는 이전하지 않을 비품을 불용결정 후 폐기처분하는 내용으로 지사장의 결재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사 전날인 휴일에 위임직 조사원 등과 함께 기존 사무소의 철제 문틀, 유리 등을 철거하고 앵글선반을 분해하였습니다. 이어 앵글선반과 의자, 사물함 등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하여 1,025,000원을 개인계좌 등으로 받았고, 철거한 도어락과 유리는 자신의 집 등으로 가져갔습니다. 피고는 비품의 무단 판매, 휴일 시간외근로 시간의 사적 사용, 위임직 조사원 등에 대한 사적 노무 요구, 사무실 부속물의 철거 및 취득을 사유로 원고를 징계해직하였고, 원고는 해직처분의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의 행위가 지사장의 업무 지시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사적 목적에 의한 것인지, 그리고 징계해직의 양정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고정자산 관리 및 사무소 이전 업무의 담당자가 원고가 아니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고의 행위가 업무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라 사적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어차피 버릴 거면 내가 가져가겠다"는 원고의 말에 지사장이 "가져가도 좋다"고 답한 사실은 인정되나, 법원은 이를 이사에 관한 업무 지시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판매대금을 회사 계좌에 입금한 것은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였고, 담당자와 아무런 상의도 하지 않았으며, 철거한 유리로 집에 온실을 만들려 하였다고 스스로 진술한 점도 근거로 삼았습니다.

법원은 휴일 시간외근로 시간을 사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징계사유와 위임직 조사원 등에게 사적 노무를 요구하였다는 징계사유도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조사원 등이 호의로 도왔을 뿐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가 자신의 지위에서 유래하는 영향력을 이용하여 직무관련자를 사적 노무에 동원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징계양정에 관하여 법원은 비품을 승인 없이 처분하고 대가를 수령한 행위는 횡령에, 사무실 부속물을 철거한 행위는 절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물건이 불용자산이거나 건물 철거가 예정되어 경제적 가치가 높지 않더라도, 범죄에 해당하는 이상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자신의 행위가 지사장의 지시에 따른 업무였다고 계속 주장하며 징계사유의 핵심 부분을 부정하고 있어 반성의 정도가 높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사장이 견책 처분을 받은 후 계약이 연장되지 않아 퇴직한 점 등에 비추어 형평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의의

대상판결은 불용품이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회사 소유 물품을 무단으로 반출하는 행위는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해치는 것으로서 해고사유가 될 수 있다는 기존 법리를 불용 비품의 중고 판매 사안에 적용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행위가 횡령, 절도에 해당하는 이상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았고, 상급자의 "가져가도 좋다"는 발언만으로는 업무 지시나 처분 승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구성원

기영석
변호사

02-316-4021
ysgi@shinkim.com

김종수
변호사

02-316-1678
jsokim@shinkim.com

이세리
변호사

02-316-4034
srlee@shinkim.com

조찬영
변호사

02-316-4109
cyocho@shinkim.com

Copyright SHIN & KIM LLC. All rights reserved.